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85호

「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3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공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12114호, 2013. 12. 24. 공포·시행)되고, 중소기업청의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25020호, 2013. 12. 2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중소기업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1명(본부 1명)을 감축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(본부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3. 12. 17. ~ 12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별정직공무원”을 “일반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별정직 계 “3”을 “2”로 하고, “고위공무원단(차장) 1”을 삭제하며, 일반직 계 “341”을 “342”로 하고, 고위공무원단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13”을 “12”로 한다.

별표 3 중 별정직 계 “3”을 “2”로 하고, “고위공무원단(차장) 1”을 삭제하며, 일반직 계 “340”을 “341”로 하고, 고위공무원단 “7”을 “8”로 하며,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10”을 “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차장)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별정직공무원</u> 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.	제2조(차장) ----- ----- <u>일반직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,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3</u>	<u>2</u>	-1
<u>고위공무원단(차장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41</u>	<u>342</u>	+1
고위공무원단	<u>7</u>	<u>8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13</u>	<u>12</u>	-1
·	·	·	

[별표 3]

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3</u>	<u>2</u>	-1
<u>고위공무원단(차장)</u>	<u>1</u>	<삭 제>	-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40</u>	<u>341</u>	+1
고위공무원단	<u>7</u>	<u>8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10</u>	<u>9</u>	-1
·	·	·	